

해기품질관리 교육·훈련 운영지침

(제정) 2000-04-30

(개정) 2000-10-19

(개정) 2004-07-20

(개정) 2015-08-26

제1조(목적) 본 운영지침은 해기품질관리규정 제5조 1의 규정에 의거 해기품질 관리업무에 관한 교직원의 교육·훈련을 위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교육과정 및 대상 등) ① 해기품질관리업무에 관한 교육과정·대상내용·시간 등은 다음과 같다.

교육과정	교육대상	교육내용	교육시간	시행시기	교육주관
신규교육	신규채용한 교 직 원	▷본대학 현황 ▷관련부서의 기능 및 주요업무 ▷해기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▷시설견학	4시간 이상	임용후 14일 이내	평가대상 부 서 장
직무교육	신규채용한 교 직 원	▷소속과의 업무의 개요 ▷담당업무내용 및 업무수행 요령	2시간 이상	임용후 14일 이내	〃
	소속과를 이 동 한 교 직 원			인사발령 후 14일 이내	
해기품질 관리교육	관련담당 교 직 원	▷해기품질관리체제의 개념 및 필요성·내용 등	2시간 이상	필요시	해기품질관 리 책임자 지정
내·외부 평가교육	내부평가 위 원	▷해기품질체제의 개념 및 내부 평가업무 수행 요령	3시간 이상	임용후 14일 이내	해기품질관 리 책임자 지정

② 해기품질관리책임자는 교직원의 해기품질관리에 관한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외부기관에 교육·훈련을 위탁하거나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할 수 있다.

③ 해기품질관리책임자는 해기능력 고양을 위하여 승선경력이 없는 교원에 대한 승선연수 계획을 수립·시행한다 <신설 2015.8.26>

제3조(교육계획 수립)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평가대상 부서의 장 또는 교육주관자로 지정된 자는 해당교육과정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 해기품질관리책임자에게 교육과정 및 내용, 시간,

강사 등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.

제4조(교육시행) ① 교육시행자는 해당 교직원에게 제3조의 지침에 의거 보고한 교육계획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제2조 제2항의 지침에 의한 교육에 관하여는 사무국에서 관장한다.

제5조(평가) 교육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점수가 60%미만인 직원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6조(교육결과 보고) 제2조 제2항의 지침에 의한 교육에 관하여는 교육시행 결과를 해기품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7조(해기품질관리교육·훈련 관련 문서의 관리) 교직원의 해기품질관리교육·훈련에 관련된 문서는 사무국에서 관리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운영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결재를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.